

# 국내시장 복귀계좌(RIA) 등 세법개정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통과 및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

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'26.3.17.(화) 국내시장 복귀계좌(RIA)에 대한 세제 혜택,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「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」 및 「2025년 세법개정안」 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세법 개정안\*을 의결하였다.

\* 조세특례제한법, 소득세법, 국세기본법, 국세징수법,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, 농어촌특별세법, 관세법, 관세사법

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의 세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」을 입법예고('26.3.18.~3.31.) 할 예정(☞ 자세한 내용은 【참고2】)이다.

오늘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 조세특례제한법

- ①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(RIA)에 대한 과세 특례 도입(1년 한시)
  - 매도 시점별 공제율: (~5.31일) 100%, (~7.31일) 80%, (~12.31일) 50%
- ② 환헛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특례 도입(1년 한시)
- ③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(95%→100%, 1년 한시)
- ④ 저세율국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(CFC)이 배당가능소득을 국내에 모두 배당시 당해연도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(1년 한시)

## 농어촌특별세법

- 1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 계좌(RIA) 과세 특례, 환헛지 파생상품 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

## 소득세법

- 1 아동수당과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연령 단계적 인상\*  
\* ('25) 8세 → ('26) 9세 → ('27) 10세 → ('28) 11세 → ('29) 12세 → ('30) 13세 이상

## 국세기본법

- 1 「국세기본법」상 원본 개념에 전자화문서\* 포함

\*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한 문서

## 국세징수법

- 1 압류금지 재산에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명시

※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. (044-215-내선번호)

- 금융세제(4231~2, 4236), 국제조세(4651, 4656), 소득세제(4211, 4215), 주류면허법(4333, 4337), 국세기본법·국세징수법(4151, 4152, 4154), 관세(4412, 4418)

담당 부서	세제실 조세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진규 (044-215-4110)
		담당자	사무관	이원준 (044-215-4111)



조세특례제한법

1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(RIA)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(조특법 §91의26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내시장복귀계좌(RIA*)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</p> <p>* Reshoring Investment Account</p> <p>○ (요건) 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 후, 매도 대금을 1년간 RIA 내에서 투자</p> <p>- (매도 방법) '25.12.23.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로 입고시킨 후, RIA 내에서 매도 (매도금액 5천만원 한도)</p> <p>- (투자)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</p> <p>*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</p> <p>▪ 단, RIA 내 국내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 초과 수익은 수시 출금 가능</p> <p>○ (혜택) 해외주식 매도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일정비율 공제</p> <p>① '26.5.31.까지 매도: 100% 공제</p> <p>② '26.7.31.까지 매도: 80% 공제</p> <p>③ '26.12.31.까지 매도: 50% 공제</p> <p>- 단, '26년 중 해외주식등을 순매수하는 경우, 해당 금액만큼 공제 비율 조정</p> <p>○ (적용기한) '26.12.31.까지</p>

<개정이유>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'26.1.1. 이후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

2 환헛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(조특법 §91의27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투자자용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 (이하 '환헛지 파생상품')에 대한 과세특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요건) 환헛지 파생상품 투자</li> <li>○ (혜택) '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환헛지 파생상품 투자액의 5%를 공제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헛지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</li> </ul> </li> <li>○ (한도) 500만원 한도</li> <li>○ (적용기한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환헛지 파생상품) '26.12.31.까지 투자</li> <li>- (해외주식) '26.12.31.까지 매도</li> </ul> </li> </ul>

<개정이유> 외환시장 안정화 및 개인투자자 환위험 관리 지원

<적용시기> '26.1.1. 이후 환헛지 상품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3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한시 확대(조특법 §23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익금불산입률 및 익금불산입 범위 한시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대상)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, 분배금</li> <li>○ (외국자회사 요건) 지분을 10% 이상,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</li> <li>○ (익금불산입률) 100%*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현재 일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, 분배금은 95% 익금불산입 적용 중(「법인세법」 제18조의4)</li> <li>- 특정외국법인이 배당가능소득을 전액배당하는 경우의 수입배당금도 100% 익금불산입</li> </ul> </li> <li>○ (차입이자 상당액) 차입한 재원으로 해외자회사에 출자시, 차입이자 상당액을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</li> <li>○ (적용기한) '26.12.31.까지</li> </ul>

<개정이유> 외환시장 안정화 지원

<적용시기> '26.1.1.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

농어촌특별세법

1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(RIA) 과세특례, 환헛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과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(농특법 §4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농어촌특별세* 비과세 대상인 양도소득세 감면 *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감면세액의 20%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 대상 추가 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 <input type="checkbox"/> 환헛지 파생상품 과세특례

<개정이유>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법 시행일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

소득세법

1 자녀세액공제 대상연령 단계적 인상(소득법 §59의2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자녀세액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공제대상자녀) 기본공제 대상자인 <u>8세 이상</u>의 자녀 또는 손자녀</li> <li>○ (공제금액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첫째) 25만원</li> <li>- (둘째) 30만원</li> <li>- (셋째 이후) 40만원/인</li> </ul> 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대상자녀 연령 단계적 인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'26) <u>9세 이상</u>*</li> <li>○ ('27) <u>10세 이상</u>*</li> <li>○ ('28) <u>11세 이상</u>*</li> <li>○ ('29) <u>12세 이상</u>*</li> <li>○ ('30) <u>13세 이상</u>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※ '17년생은 '26~'29년간 아동수당 지급대상이므로 적용배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

<개정이유> 아동수당과의 중복적용 배제

<적용시기>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국세기본법

1 「국세기본법」상 원본 개념에 전자화문서 포함(국기법 §16④, §81의10⑥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「국세기본법」상 원본 관련 규정</p> <p>①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<u>원본</u>과 일치함을 확인</p> <p>② 일시보관 장부 등을 반환할 때 사본이 <u>원본</u>과 일치함을 확인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원본 개념에 전자화문서* 포함</p> <p>*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§5</p> <p>① <u>원본(전자화문서 포함)</u></p> <p>② <u>원본(전자화문서 포함)</u></p>

<개정이유> 원본 개념 명확화

국세징수법

1 압류금지 재산에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명시  
(국징법 § 41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</p> <p>○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</p> <p>- 보험금, 해약 및 만기환급금,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 등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에 「민사집행법」상 생계비계좌 명시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○ 「민사집행법」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</p>

<개정이유>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명확화

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

1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(주류면허법 §28·§38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주류용기 등 검정 제도* *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·저장 용기 등의 용량 등을 사용 전에 확인하는 제도 ○ (검정의무자) 주류·밑술·술덧 제조자 및 주류 판매업자 ○ (검정대상) 제조·저장·판매 기계·기구·용기 ○ (절차) 용기 등 사용 전 검정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 ○ (신고의무자) 주류·밑술·술덧 제조자 ○ (신고대상) 제조·저장 용기 ○ (절차) 용기 사용 전 신고* * 법령상 적합한 경우 신고 수리 - 주류제조면허 신청시 별도의 용기 신고 생략 가능
<input type="checkbox"/> 과태료(2천만원 이하) 부과 사유 ○ 미검정 용기 등 사용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부과 사유 조정 ○ 미신고 용기 사용 ○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

<개정이유> 주류제조자 등 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'26.7.1.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

1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(조특령 § 93의12 신설)

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91의26) >

- '25.12.23. 이전 보유 해외주식을 국내시장 복귀계좌(RIA)를 통해 양도 (양도대금 5천만원 한도)하고 양도대금으로 1년간 RIA 내에서 투자 시, 양도시점에 따라 50~100% 양도소득금액 공제\*

\* 양도시점별 공제율: (~5.31.) 100%, (~7.31.) 80%, (~12.31.) 50%

-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의 구체적 요건 및 공제금액 계산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

①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세부 요건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국내시장 복귀계좌 세부 운용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특례대상 해외주식) '25.12.23.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의 수량을 한도로 RIA를 통해 매도 가능</li> <li>○ (납입한도) 「① + ②」가 납입한도(전 계좌 합계 5천만원)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외주식 매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①대금결제 완료분: 결제 후 환전된 금액</li> <li>- ②대금결제 미완료분*: 해당 매도주문 시점 기준 최근일의 종가 및 매매기준율(환율)로 환산한 금액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* 매도계약은 체결되었으나, 아직 대금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분</li> <li>○ (수익금 인출) RIA 내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 인출시 수익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봄</li> </ul>

<개정이유> 국내시장 복귀계좌 세부 운용요건 규정

## ② 국내시장 복귀계좌 공제금액 계산방법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내시장 복귀계좌 공제금액 계산방법</p> <p>○ (공제금액) RIA 내 양도소득금액 × 공제율 × 조정비율</p> <p>- (조정비율) <math>1 - \frac{RIA \text{ 외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재산 순매수금액}}{RIA \text{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}}</math></p> <p>* 매수·매도금액은 기간별 매수·매도금액에 (1.1.~5.31.) 100%, (6.1.~7.31.) 80%, (8.1.~12.31.) 50% 비율을 곱하여 계산</p> <p>○ (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재산의 범위)</p> <p>① 해외주식*, ② 국내상장 해외 ETF·ETN, ③ 해외주식형펀드**</p> <p>* 해외상장 ETF 포함 ** 해외주식에 60% 이상 투자하는 펀드</p>

<개정이유> 국내시장 복귀계좌 세부 운용요건 규정

③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신청 및 사후관리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신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신청방법) '2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청서 제출</li> <li>○ (첨부서류) ①과세특례신청서, ②해외주식등거래명세서*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해당 투자자가 '26년에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 대체재산을 순매수한 경우, 해당 순매수금액 내역서(각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에서 발급)</li> </ul> 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사후관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사후관리 대상) RIA 납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입원금(수익금은 인출 가능)을 인출한 경우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천재지변, 사망 또는 3개월 이상의 입원·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시 사후관리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○ (납부세액) 감면세액 상당액 + 이자상당 가산액*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× 0.022%</li> </ul> </li> <li>○ (납부방법)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·납부</li> </ul>

<개정이유>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신청방법 및 사후관리 내용 규정

2 환헛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과세특례 세부 요건(조특령 §93의13 신설)

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91의27) >

- '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,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(환헛지 파생상품) 투자액의 5%를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
- 환헛지 파생상품 과세특례의 구체적 요건 및 환헛지 파생상품 투자액의 계산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(환헛지 파생상품) 과세특례 세부 요건</li> <li>○ (환헛지 파생상품 요건) 거주자가 투자매매업자와 장외파생상품 형식의 선물환 매도 계약 체결</li> <li>○ (투자액 계산방법) 선물환 매도금액 × 「환헛지 파생상품 보유 일수/275일<sup>*</sup>」</li> <li>* '26.4.1일부터 12.31일까지의 일수</li> <li>- 단, 투자액은 '25.12.23.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의 가액<sup>*</sup>을 한도로 인정</li> <li>* '25.12.23. 종가 및 매매기준율(환율)로 평가한 가액</li> <li>○ (과세특례 신청) '2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시 신청서 제출</li> </ul>

<개정이유> 환헛지 파생상품의 세부 운용요건 규정

3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(조특령 §20 신설)

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23) >

- 국내모회사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\*(이익의 배당금·분배금)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95% → 100%로 한시 상향
  - \* (적용기한) '26.1.1.~12.31. 중 받은 수입배당금으로 한정
- 출자자금 차입이자 등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의 계산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외국자회사 요건) 지분율 10% 이상,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</li> <li>○ (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금액) <math>A \times (B/C)^*</math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A: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</li> <li>B: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)의 장부가액 적수</li> <li>C: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적수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
<개정이유>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방법 규정